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석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9. 18.

발 의 자 : 이석현 · 노웅래 · 이상직
장병완 · 홍익표 · 전정희
유성엽 · 박완주 · 전해철
윤후덕 · 김동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상가 등 일부 동(棟)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시 동별 높은 동의요건을 이용하여 좋은 입지조건인 상가나 주택 배정 등을 요구하면서 주택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조합설립 요건 중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현행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

완화하고 현행 각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전단 중 “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”를 “구분소유자의 2분의 1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조합의 설립인가 등) ① (생략)	제16조(조합의 설립인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(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)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(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(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구분소유자 의 2분의 1 이상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시장·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. ③ ~ ⑥ (생략)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